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산업단지 개발,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을 확대하고,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·증축·이축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(안 별표5)

- 1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산업단지는 현행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% 감면하였으나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전산지에서도 100%를 감면하도록 함. (안 제2호 자목)
- 2)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(창고업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) 및 물류단지는 국가 등 사업자의 구분

없이 보전산지, 준보전산지 모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비를 100% 감면하도록 함(안 제2호 카목)

3) 공기업·준정부기관·지방공사·지방공단 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타목에서 정하는 1)~12)의 시설의 감면비율을 현행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해 각각 50% 감면하던 것을 각각 100%감면으로 확대함 (안 제2호 타목)

4) 광물의 채굴과 비영리법인이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감면이 없던 보전산지에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% 감면하도록 함 (안 제3호 자목, 차목)

5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)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보전산지, 준보전산지 모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% 감면하도록 함(안 제3호 저목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~ 5. .)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2호 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)		
1) 국가산업단지	100	100
2) 국가산업단지의 외 산업단지	0	100
카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(창고업으로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) 및 물류단지	100	100

별표 5 제2호 타목 감면비율(퍼센트)의 보전산지란 중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타목 감면비율(퍼센트)의 준보전산지란 중 “50”을 “100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3호 자목 감면비율(퍼센트)의 보전산지란 중 “0”을 “1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의 감면비율(퍼센트)의 보전산지란 중 “0”을 “100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	100	1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

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·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. 다만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41